

형 법

★ 해설 부분에 언급된 <송형총>은 에듀윌 기본서 형법총론을 말하고, <송형각>은 에듀윌 기본서 형법각론을 말합니다.

문 1.

정답 ② [21 순경차]

- 해설** ①(○). 대판 2000.4.21., 99도3403. <송형총 98면><기출>
 ②(×). 공문서위조죄의 경우 외국인의 국외범도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제5조 제6호 참조. <송형총 100면><기출>
 ③(○). 대판 2017.3.22., 2016도17465. <송형총 101면><파이널 최신판례특강자료 37면><기출>
 ④(○). 대판 2017.8.24., 2017도5977, 전원합의체판결. <송형총 103면><파이널 최신판례특강자료 37면><기출>

문 2.

정답 ③ [21 순경차]

- 해설** ①(×).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이 경우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면 '인식사실의 미수와 발생사실의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므로, A에 대한 살인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이에 반해 법정적 부합설은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하므로 B에 대한 살인기수가 성립한다. <송형총 189면><기출>
 ②(×).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 경우 착오에 관한 모든 학설은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기수'를 인정한다. 따라서 구체적 부합설도 A에 대한 살인기수를 인정한다. <송형총 189면><기출>
 ③(○). 장모도 직계존속에 해당하되, 직계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인을 한 경우 형법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대판 1960.10.31., 4293형상494 참조). <송형총 186면><기출>
 ④(×).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살해의 의도로 행한 구타행위에 의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에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8.6.28., 88도650). <송형각 193면><기출>

문 3.

정답 ① [21 순경차]

- 해설** ㉠(×). 정당방위상황(객관적 정당화상황)은 존재하지만 방위이사(주관적 정당화요소) 없이 행위 한 경우를 '우연방위'라고 한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요건에 있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 없다는 견해는 위법성조각을 위해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있으면 된다는 입장이므로, 이 견해에 의하면 우연방위의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송형총 237면><기출>
 ㉡(○).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판 2003.11.13., 2003도3606 참조. <송형각 242면><기출>
 ㉢(×).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므로, 제3자의 범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범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범익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20.9.3., 2015도1927). <파이널 최신판례특강 보충자료 2면>
 ㉣(○). 대판 2020.9.3., 2015도1927. <파이널 최신판례특강 보충자료 2면>

문 4.

정답 ④ [21 순경차]

- 해설**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임의적 감경). <송형총 330면><기출>
 ㉡(×).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서 그 판단에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8.9.13., 2018도7658; 대판 1999.1.26., 98도3812). <송형총 329면><파이널 최신판례특강자료 58면><기출>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에서 찾아 원인행위시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견해, 즉 일치설은 원인행위시를 실행행위로 봄으로써 행위와 책임의 동시존재의 원칙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원인설정행위를 실행행위로 보면 구성요건적 정형성을 무시하게 되고, 예비에 불과한 행위를 미수로 처벌함으로써 가벌성의 확장을 가져와 죄형법정주의의 보장적 기능마저 무시하게 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송형총 333면><기출>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찾아 실행행위를

심신장애상태 하에서의 행위로 파악하는 견해는 ‘예외설’이다. 지문과 같은 비판은 예외설이 아닌 ‘일치설’에 대한 비판이다(㉔해설 참조). <송형총 333면> <기출>

문 5.

정답 ③

[21 순경차]

해설 ★ 사례의 경우 경찰관 甲의 행위는 i)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된다. ii) 한편 甲은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한 객관적 정당화상황(가정폭력)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존재한다고 착오하고 이를 막기 위한 의사(주관적 정당화요소는 존재)를 가지고 주거침입행위로 나아간 경우에 해당한다. 즉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①(○). 위법성인식을 고의의 내용으로 보는 (엄격)고의설의 태도이다. 고의설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에도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므로 고의가 조각되고, 다만 그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이 문제되거나 주거침입죄의 경우 과실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과실의 존재여부에 상관없이 무죄가 된다. <송형총 358면> <기출>

②(○).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금지착오)로 보는 견해는 **엄격책임설**이다. 이에 의하면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규정이 적용되고, 그에 따라 그 착오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아니한다. <송형총 358면> <기출>

③(×).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해결하는 견해는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지만 심정반가치로서의 책임고의가 조각되어 고의범의 성립을 부정하고, 그 착오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실범의 법효과를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과실의 존재여부에 상관없이 무죄가 된다. <송형총 359면> <기출>

④(○). 대판 1986.10.28., 86도1406; 대판 1968.5.7., 68도370 등 참조. <송형총 359면> <기출>

문 6.

정답 ②

[21 순경차]

해설 ①(×).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하지만(제27조), **장애미수는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다’(제25조 제2항, 임의적 감경).** <송형총 396면, 373면> <기출>

②(○). 대판 1986.1.21., 85도2339; 대판 2011.11.10., 2011도10539. <송형총 389면> <기출>

③(×). 피고인의 이 부분 소송사기 범행은 실행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 발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도 없다** 할 것이어서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5.12.8., 2005도8105). <송형총 401

면> <기출>

④(×).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99.4.9., 99도424). <송형총 393면> <기출>

문 7.

정답 ②

[21 순경차]

해설 ①(×).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판 2015.6.24., 2014도11315; 대판 2011.4.14., 2010도10104). <송형총 204면> <기출>

②(○). 대판 1996.11.8., 95도2710.

③(×). 형법상 미수는 모두 고의범이다. 따라서 과실범의 미수는 처벌할 수 없다. <송형총 217면> <기출>

④(×). 피고인이 경력이 오래된 간호사라 하더라도 단지 잘 모르는 약제가 처방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 처방의 적정성을 의심하여 의사에게 이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지만, **환자에 대한 투약 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를 관찰·보고하고 환자의 요양에 필요한 간호를 수행함을 그 직무로 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간호사로서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투약 전에 미리 그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판 2009.12.24., 2005도8980). <송형총 201면> <기출>

문 8.

정답 ②

[21 순경차]

해설 ㉠(○). 대판 2004.6.24., 2002도995. <송형총 143면> <기출>

㉡(×).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판 2015.11.12., 2015도6809, 전원합의체판결; 대판 1996.9.6., 95도2551). <송형총 149면, 152면> <기출>

㉢(×).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이러한 작위의무자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경우는 물론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대판 2015.11.12., 2015도6809, 전

원합의체판결). <송형총 148면> <기출>

㉔(○). 대판 1984.11.26., 84도1906 등. <송형총 158면> <기출>

문 9.

정답 ③ [21 순경차]

해설 ㉑(×). 제한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공범이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정범이 책임이 조각된다 하더라도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송형총 420면> <기출>

㉒(×). 교사자는 고의범으로서 이중의 고의가 있어야만 교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 즉 교사자에게는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가지게 하고(교사의 고의) 정범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할 고의(정범의 고의)가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교사자에게 고의가 없다면 살인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수 없다. 한편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을 수 있다(대판 2002.10.25., 2002도4089).” <송형총 473면, 477면> <기출>

㉓(○). 대판 2004.12.24., 2004도5494 등. <송형총 438면> <기출>

㉔(○). 대판 1997.4.17., 96도3377 등. <송형총 485면> <기출>

㉕(×).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소위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케 하는 것으로 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는 시비를 판별할 능력이 없거나 강제에 의하여 의사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자, 구성요건적 범의가 없는 자와 목적범이거나 신분범일 때 그 목적이나 신분이 없는 자, 형법상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또는 자구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책임무능력자,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는 자, 의사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자, 목적범·신분범인 경우 그 목적 또는 신분이 없는 자 위법성이 조각되는 자 등을 마치 도구나 손발과 같이 이용하여 간접으로 죄의 구성요소를 실행한 자를 간접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다(대판 1983.6.14., 83도515, 전원합의체판결). <송형총 429면> <기출>

문 10.

정답 ④ [21 순경차]

해설 ①(○). 대판 2019.8.29., 2018도13792, 전원합의체판결. <송형각 776면> <파이널 최신판례특강자료 178면> <기출>

②(○). 대판 2018.8.30., 2018도10047; 대판 1997.12.26., 97도2609. <송형총 493면> <파이널 최신판례특강자료 63

면> <기출>

③(○). 대판 2017.4.7., 2017도378; 대판 1986.2.11., 85도448. <송형총 457면> <파이널 최신판례특강자료 63면> <기출>

④(×). 상습도박의 죄나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도박을 반복해서 거듭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인 바,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도박방조의 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을 하고 또 도박방조를 하였을 경우 상습도박방조의 죄는 무거운 상습도박의 죄에 포괄시켜 1죄로서 처단하여야 한다(대판 1984.4.24., 84도195). <송형총 498면> <기출>

문 11.

정답 ③ [21 순경차]

해설 ①(○). 대판 2007.6.29., 2005도3832. <송형각 34면> <기출>

②(○). 대판 2017.12.28., 2015도5854(공보불게재).

③(×).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대판 1984.5.15., 84도488). <송형총 464면> <기출>

④(○). 대판 2009.3.26., 2007도3520 등. <송형각 45면> <기출>

문 12.

정답 ① [21 순경차]

해설 ㉑(○). 대판 2020.1.30., 2018도2236, 전원합의체판결. <송형각 750면> <파이널 최신판례특강자료 169면> <기출>

㉒(○). 대판 2019.8.29., 2018도13792, 전원합의체판결. <송형각 90면> <파이널 최신판례특강자료 87면>

㉓(×).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는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 자신의 직무집행으로 귀결될 뿐이므로 원칙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판 2011.2.10., 2010도13766). <송형각 749면> <기출>

㉔(○). 대판 1986.7.8., 84도2922. <송형각 76면> <기출>

문 13.

정답 ① [21 순경차]

- 해설** ㉠(○). 대판 2019.6.13., 2019도3341. <파이널 최신판례특강자료 96면>
 ㉡(×).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행을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대판 2018.2.8., 2016도17733). <송형각 122면><파이널 최신판례특강자료 56면> <기출>
 ㉢(○). 대판 2020.8.27., 2015도9436, 전원합의체판결. <파이널 최신판례특강자료 95면> <기출>
 ㉣(○). 대판 2019.6.13., 2019도3341. <파이널 최신판례특강자료 96면>

문 14.

정답 ③ [21 순경차]

- 해설** ①(○). 대판 2016.12.27., 2014도15290. <송형각 152면> <기출>
 ②(○). 대판 2017.4.26., 2016도18024. <송형각 157면><파이널 최신판례특강자료 106면> <기출>
 ③(×).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더라도, 글의 집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체계 및 전개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 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7.12.5., 2017도15628; 대판 2017.5.11., 2016도19255). <송형각 160면><파이널 최신판례특강자료 105면>
 ④(○). 대판 1999.6.8., 99도1543. <송형각 170면> <기출>

문 15.

정답 ④ [21 순경차]

- 해설** ①(○). 대판 2009.1.30., 2008도10308. <송형각 292면> <기출>
 ②(○). 대판 2004.6.24., 2004도1098; 대판 2010.9.30., 2010도7405. <송형각 291면> <기출>
 ③(○). 대판 2013.2.28., 2012도15303. <송형각 273면> <기출>

출

- ④(×).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14.2.21., 2013도14139). <송형각 277면> <기출>

문 16.

정답 ④ [21 순경차]

- 해설** ①(×).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4.5.14., 2004도677). <송형각 373면> <기출>
 ②(×).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라도 그와 동시에 형법상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행정법규에서 사기죄의 특별관계에 해당하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권력작용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침해행정에 속한다. 이러한 침해행정 영역에서 일반 국민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권력작용에 의한 재산권 제한을 면하는 경우에는 부과권자의 직접적인 권력작용을 사기죄의 보호법익인 재산권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행정법규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대판 2019.12.24., 2019도2003). <송형각 317면> <파이널 최신판례특강자료 113면>
 ③(×).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설령 그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운영되어 의료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달리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내지 요건이 흠결되지 않는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9.5.30., 2019도1839). <송형각 321면><파이널 최신판례특강자료 116면>
 ④(○). 대판 2017.9.26., 2017도8449; 대판 2017.8.29., 2016도18986. <송형각 371면><파이널 최신판례특강자료 118면> <기출>

문 17.

정답 ① [21 순경차]

해설 ①(○). 대판 2014.2.21., 2013도14139 <송형각 277면> <이출>

㉠(×).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낮)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간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가 형법 제332조, 제329조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판 2015.10.15., 2015도8169). <송형각 232면> <파이널 최신판례특강자료 111면> <이출>

㉡(○). 대판 1995.3.10., 94도2422; 대판 2006.5.12., 2005도9595. <송형각 406면> <이출>

㉢(×). ...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신고가 있었다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사이의 사기죄는 이른바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형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5.12.10., 2014도11533). <송형각 264면> <이출>

문 18.

정답 ② [21 순경차]

해설 ①(○). 대판 2020.8.27., 2019도14770, 전원합의체판결. <파이널 최신판례특강자료 129면> <이출>

②(×).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20.6.18., 2019도14340, 전원합의체판결). <송형각 526면> <파이널 최신판례특강자료 143면> <이출>

③(○). 대판 2018.12.13., 2016도19308. <송형각 520면> <파

이널 최신판례특강자료 142면> <이출>

④(○). 대판 2017.7.20., 2014도1104, 전원합의체판결. <송형각 493면> <파이널 최신판례특강자료 134면> <이출>

문 19.

정답 ③ [21 순경차]

해설 ①(○). 대판 2019.3.14., 2018도18646. <송형각 629면> <파이널 최신판례특강자료 184면> <이출>

②(○). 대판 2010.11.11., 2010도1835. <송형각 630면> <이출>

③(×). 가정법원의 서기관 등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작성한 뒤 이를 이혼의사확인신청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면서 이혼신고서를 확인서등본 뒤에 첨부하여 그 직인을 간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혼신고서가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의 일부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간인으로 연결된 이혼신고서를 떼어내고 원래 이혼신고서의 내용과는 다른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이혼의사확인서등본과 함께 호적관서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변조하였다거나 변조된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행사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9.1.30., 2006도7777). <송형각 637면> <이출>

④(○). 대판 2018.9.13., 2016도20954. <송형각 645면> <파이널 최신판례특강자료 154면> <이출>

문 20.

정답 ④ [21 순경차]

해설 ①(○). 대판 2004.5.28., 2004도1442 등. <송형각 757면> <이출>

②(○). 대판 2009.7.23., 2009도3924. <송형각 782면> <이출>

③(○). 대판 2017.12.22., 2017도12346. <송형각 757면> <파이널 최신판례특강자료 176면> <이출>

④(×). 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그 주체는 현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되므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퇴직 후 이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뇌물약속과 뇌물수수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연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뇌물약속죄 및 사후수취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0.10.14., 2010도387). <송형각 767면> <이출>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